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첫걸음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 베트남 -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 베트남 -



기술보호 법률 동향

- 2019년 개정된 경쟁법(Law on Competition)에서는 지식재산권법과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기술유출 및 영업기밀 보호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이 적용
- 베트남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률로는,
 - 민법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2006년 1월 1일 시행),
 - 형법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하여 특정(2000년 1월 1일 시행),
 -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식재산권, 식물품종에 관한 권리 보호에 관하여 규정(2006년 7월 1일 시행)

영업비밀의 요건 (지식재산권법 제84조)

비공지성

▶ 주지의 사실도 아니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야 함

경제적 유용성

▶ 영업활동에 이용될 때 영업비밀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들을 능가하여 영업비밀의 소유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함

비밀관리성

▶ 영업비밀이 개시되지도 않고 쉽게 접근할 수도 없도록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영업비밀의 소유자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함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

구 분	내 용
경영정보	원가분석 정보, 거래처 정보, 경영분석 정보, 신규 투자 개발 계획, 신제품 개발 / 생산 계획, 마케팅 / 판매 계획 등
기술정보	시설 및 제품 설계도, 기계설비 및 장비, 실험데이터, 물질의 배합방법, 제품의 생산 및 제조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 비밀의 주요 차이점

구 분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술정보, 경영정보
보호기간	특허(20년), 실용신안(10년), 디자인(5년), 상표(10년) 등	비밀로서 관리되는 한 무한
장점	독점배타적 권리 부여, 기술의 경제적 가치 상승	권리유지 비용 미발생, 기술내용 미공개로 경쟁 우위 유지
단점	기술 공개, 권리화 비용 발생, 권리유효기간 존재	영업비밀 입증 곤란, 기업내부 비밀유지 관리 곤란

기술유출과 침해 대응 사례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례

영업비밀 유출과 해고 사례

- 내용 : 현지 고용 베트남 직원이 본인의 여동생에게 회사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로 유출한 사례
- 쟁점 :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유출한 직원의 해고가 노동법에서도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
- 시사점 :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여 제정 및 등록된 사내 근로규정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금지 규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
※ 단, 베트남에서는 선행 판결이 후행 판결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임
- 현지 고용 베트남 직원이 본인의 여동생에게 회사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로 유출
-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미국계 기업으로 비밀정보의 이메일을 통한 유출을 사유로 현지 고용 베트남 직원을 해고한 사건을 발단으로 제기된 소송
- 영업비밀 보호 및 유출금지 의무 내용이 적법하게 제정되고, 노동 관련 부처에 등록된 내 부 근로규정에 반하여 해당 직원이 회사 제품 관련 영업비밀을 여동생에게 이메일로 유출 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 적법하게 제정 등록된 사내 근로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줌. 베트남 법원이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노동법 규정을 온전히 준수하여 제정 및 등록된 사내 근로규정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금지 규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

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례

경업금지 의무와 보상

- 내용 : 영업비밀 업무 종사자가 퇴사 후 1년간 경쟁업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
- 쟁점 : 영업비밀 업무 종사자가 퇴사 후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의무 계약이 유효한가에 대한 쟁점
- 시사점 : 영업비밀 또는 기술적 노하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경업금지의 경우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도 경쟁업체에 대한 1년 기간의 취업금지의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베트남 기업이 회사의 비밀정보 보호 차원에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간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한 고용계약을 직원과 체결
- 법원은 해당 직원이 고용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에 대하여 별도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관련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체결된 순수한 민사법적인 계약으로서 적법한 효력을 가지므로 경업금지 규정 역시 적법한 것으로 판시
- 베트남 기업이 회사의 비밀정보 보호 차원에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간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한 고용계약을 직원과 체결
- 법원은 해당 직원이 고용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에 대하여 별도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관련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체결된 순수한 민사법적인 계약으로서 적법한 효력을 가지므로 경업금지 규정 역시 적법한 것으로 판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례

서약서 및 계약서를 베트남어로 작성

- 내용 :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의 퇴직 후 경쟁사 취업 금지 의무 위반 사례
- 쟁점 : 한국어로 법인의 명칭 및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발생 여부
- 시사점 : 서약서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한국 모회사인지 베트남 현지법인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작성이 필요
 - 재직 중 체결하였던 퇴사 후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는 영업비밀 유출 금지, 경쟁업체 취업 금지(1~3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첨으로 영업비밀에 대하여 십여 가지 정보들을 나열함
 -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의 다른 특징 내지는 문제점은 전직을 시도한 임원의 이전 직장이 베트남 현지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문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서약서상 베트남 법인의 명칭도 국문으로 작성하면서 부정확한 법인 형태의 명칭을 사용
 - 이직자가 기존 직장의 고객사들에 대한 영업을 1년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직을 허용
 - 서약서나 계약서를 국문 이외에 베트남어로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영문으로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만약의 분쟁에 따른 소송 진행 시 도움
 - 계약 당사자가 한국 모회사인지 베트남 현지법인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 필요



경쟁업체 창업 사례

영업비밀 유출 후 경쟁업체 창업

- 내용 :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업체를 창업한 사례
- 쟁점 : 영업비밀 유출 후 경쟁업체 창업한 경우를 금지한 판결이 없어 소송 결과가 불확실함
- 시사점 : 베트남에서 보호 인식이 약한 영업비밀 보호나 경업금지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재직 시 문제에 대한 형사적 사안이나 창업한 경쟁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 등을 기반으로 문제 제기 및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베트남 기업이 회사의 비밀정보 보호 차원에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간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한 고용계약을 직원과 체결
 - 법원은 해당 직원이 고용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에 대하여 별도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관련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체결된 순수한 민사법적인 계약으로서 적절한 효력을 가지므로 경업금지 규정 역시 적법한 것으로 판시

위조품 단속 사례

시장관리국과 연계하여 위조품 단속

- 내용 : 위조품 단속을 베트남 시장관리국과 연계하여 실행
- 쟁점 : 베트남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전 현장 조사를 하고, 시장관리국과 연계하여 단속하되, 단속 비용 및 시장관리국의 활동비 요구 등 부수적인 비용 부담이 있음
- 시사점 : 위조품 단속을 위해서 베트남 현지인의 도움을 이용하고, 단속 결과에 대하여 당일 침해자의 서명을 받아내는 게 유리함
 -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차량 소모품의 위조품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 후 유통되어 단속
 - 외국인이 아닌 베트남 현지인 직원이나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 방문
 - 시장관리국에 정식 협조 요청 및 증거자료 제출과 그 외에도 수차례 방문 협의가 이루어짐
 - 실제 단속일에는 물리적인 충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외국인의 경우 원거리의 차량 내에서 관찰만 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현지 담당자가 진행하고 단속 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당일 침해자의 서명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
 - 이와 같은 단속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통상 20여 군데 단속에 수 천만 원 가량 소요되는 단속 비용 외에도 시장관리국의 활동비 요구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들어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이 됨

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침해 단속 사례

- 내용 : 불법사용 3D 디자인 프로그램 단속 후 피해업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 쟁점 : 베트남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이 한국 및 선진국 투자법인이고, 피해업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함
 - 시사점 : 저작권 단속 시 침해 목록 리스트를 서명 받으면, 그 리스트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구제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됨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베트남 지사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부서와 함께 실시한 단속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의 3D 디자인 프로그램 4개가 불법으로 한 제조업체 회사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적발
 - 실시한 단속을 통해 소프트웨어 회사는 침해 업체의 모든 컴퓨터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역들을 상세히 기재한 일종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체의 서명을 받음
 -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벌금 청구서를 받고 이를 납부
 - 소프트웨어 업체는 공문을 통해 단속을 통해 발견된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 4개에 대한 과거 침해에 대하여 약 18만 달러, 향후 36개월 사용 라이선스 대금 약 17만 달러, 총액 약 35만 달러를 청구
 -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5개사의 제품 총 91개 제품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세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집행 등을 위하여 설립한 BSA(Businee Software Alliance) 조직으로부터 침해에 총액 180만 달러를 청구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치열한 다통과 협상을 통하여 결국 침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구매하고 과거 침해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 총액을 약 50만 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
- ※ 단속 시 서명한 불법소프트웨어 목록 리스트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행정적 구제 절차 외에 민사적·형사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로 이용됨

상표침해 사례

상표침해 대응 방안

- 내용 : 베트남 진출을 위해 국내 의류업체가 베트남 현지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과거 협력업체 직원이 베트남에서 선출원 하여 등록을 한 사례
- 쟁점 : 해당 직원은 본인 명의가 아닌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 한국계 회사명으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법인이 상표 출원 및 등록까지 모두 마친 상태
 - 국내 의류 판매업체의 상표가 유명 상표로 인정될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
 - 선등록 상표권이 베트남 법인 명의로 처리
- 시사점 : 베트남 진출 시 상표 출원을 최대한 서두르고, 상표 양도 협상 시에도 상표등록취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직원이 현지인 명의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법인이 상표 출원 및 등록까지 모두 마친 상태
 - 국내 피해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등록 상표에 대한 양도 조건으로 상당 금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법적으로 기등록된 선행 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함

영업비밀 보호제도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영업비밀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여 보호

지식재산권법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구 분	내 용
지식재산권법 제3조 제2호	산업재산권의 객체는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1호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저작권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신품종보호권을 비롯하여 지적자산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4호	산업재산권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지리적 표시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 및 그 단체나 개인이 창작하거나 소유하는 영업비밀, 그리고 부정경쟁을 방지할 권리를 뜻한다.

영업비밀 성립의 요건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127조	
비공지성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23호 영업비밀이라 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이거나 지적인 투자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뜻한다.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지식재산권법 제6조 제3호 c. 영업비밀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적법한 취득 및 비밀성을 토대로 성립한다.
※ 단, 개인적인 식별정보, 국가 관리 비밀, 국가방어 및 안전비밀, 기타 사업상 기밀로 취급하기 부적절한 것은 인간의 영업비밀로 보지 않음	

영업비밀 침해유형
(지식재산권법 제127조 제1항)

구 분	주 요 내 용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침해 행위	① 영업비밀의 적법한 통제자에 의해 적용된 비밀유지 조치를 침해하여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 공개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 담당자를 기만, 유도, 매도, 강제, 유혹하거나 혹은 담당자의 신뢰를 남용하는 행위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용된 비밀유지 조치를 침해하여 제품의 거래 또는 유통에 관한 면허 신청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사용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침해행위의 사후적 관여행위	⑤ 위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획득된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허가를 위하여 제공된 영업비밀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규정	⑥ 동조 제128조에 따라 의약품, 농약의 유통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실험에 제공된 영업비밀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영업비밀 구제수단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민사적 구제	• 담당기관 : 인민고등법원 •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인은 고소 등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음
형사적 구제	• 담당기관 : 경찰청(Police), 관할 인민고등법원 • 현재 베트남 형사법(Criminal Code)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이 없음. • 형법상 저작권, 상표권 및 지리적표시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 • 형벌은 벌금과 구금이 있음
행정적 구제	• 담당기관 : 산업무역부 산하 국가경쟁위원회(NCC: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 경쟁법 사건이 될 경우 경쟁법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NCC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이외 검찰(Inspector), MMD(Market Management Department), 세관(Custom Office) 및 경찰 기관이 동등한 수행 권한을 부여받게 됨 • 고소는 반드시 NCC 또는 위에 언급된 다른 행정기관들에 소장과 부정경쟁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접수되어야 함

경쟁법 위반을
제재하는 방식
(경쟁법 제110조)

구 분	제 재
1. 경쟁법 위반의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위반하는 회사들 혹은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제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받음	a. 경고 b. 벌금
2. 위반의 특성 및 심각성에 따라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회사들 혹은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받음	a. 사업자등록증의 폐지, 라이선스 및 업무 증명서의 박탈 b. 경쟁법 위반을 위해 사용된 전사물 및 수단들의 몰수
3. 경쟁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이익 환수	a.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 몰수
4. 본조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제재 방식 이외에, 경쟁법을 위반하는 회사들 혹은 개인들은 다음의 사후 해결 조치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신청의 제재를 받음	a. 기업들은 시장에서 남용하고 있는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재구성할 것 b. 영업 조약 혹은 거래들로부터 불법적인 규정들을 제거할 것 c. 경제적 집중에 의해 설립된 기업 자산의 분할, 자산 또는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의 판매, 구분 d. 경제적 집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재화, 서비스, 기타 거래 조건의 구입 및 판매가격과 관련된 관련 기관의 통제 - dd. 공식적인 정정 수행 e. 위반의 경쟁제한 영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조치들

영업비밀 침해
대응 지침

-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의 해외이전이 수반되는 진출의 경우 독립법인 형태로 진출하여 자체 보호
 - 가급적 핵심기술과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공급
 - 중급기술은 해외이전 대상과 보호방법을 사전에 규정 또는 지침화
- 합작법인 형태를 통한 진출 시 합작기업이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전할 기술과 보호할 기술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책을 공동으로 강구
 - 특허 등을 통한 권리화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상세기술, 운영기술 등 영업비밀로 보호
- 모든 계약을 비롯하여 보호를 위한 조항 및 내용을 절대적으로 문서화
 - 내부 보안관리 규정, 비밀유지협약 및 보안서약서의 징구 등과 같은 보안정책에 대해 철저한 관리
 - 입사자, 재직자, 퇴사자, 이직자, 퇴직자, 협력업체 임직원 등을 아울러 전방위로 실시
- 협력업체(기술협력, 기술자문, 거래협상, 투자협정 등 포함) 임직원과의 접촉 내지는 협의 이후에는 관련 협의 내용과 함께 접촉 및 협의 내용 중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내용의 비밀성과 이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하여 최소한 이메일 등과 같은 문서를 통하여 기록을 남김
- 비밀유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문서 일체 특히 계약서 및 서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베트남어본을 작성·체결하고, 해당 문서의 당사자가 베트남 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
- 포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는 명시적인 손해배상액을 규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필요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민사, 형사, 행정 절차 관련 소요 기간 및 변호사 비용 비교

구 분	행정 절차	민사 절차	형사 절차
소요 기간	약 30~45일	약 1~2년(제1심)	약 6개월~1년(제심)
변호사 비용	USD 5,000~8,000	USD 30,000~50,000	USD 10,000~30,000

산업재산권 구제수단 별 주요내용

민사적 구제

- 담당기관 : 인민고등법원
- 민사재판을 통한 제재방법은 잘 이뤄지지 않음
 - 지재권에 대한 사법 기준 및 법정의 지재권 전문가가 부족하고, 재판비용 과 복잡한 법적 절차가 부담
 - 민사소송법 상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피해 기업이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액을 추정해야 하는 부담
-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상표권, 저작권, 도메인이름 및 부정경쟁 관련 사안이며 특허권과 실용신안에 관련된 사건은 매우 적음

형사적 구제

- 담당기관 : 경찰청(Police), 관할 인민고등법원
- 경찰에 형사 고소를 통해 공개 조사에 착수
- 혐의가 충분할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침해 범죄행위로 법원 기소하며 법원 기소는 반드시 관할 인민고등법원에 접수되어야 함
-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호치민 또는 하노이의 인민고 등법원에 접수돼야 하고, 인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고고등법원 인 대법원(Supreme)에 항고 가능

행정적 구제

- 특허청 심판, 세관, 시장관리국을 활용
-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가장 적게 들어 가장 많이 이용(민·형사소송 대비 100배)
- 처벌로써 벌금이 경미한 편이고 지식재산권 등록자에게 위반에 대한 보상금 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지효과가 제한적임
- 법원 등의 사법기관을 통하여 침해자에게 제제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시장 관리국을 통하여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장관리국은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및 산업디자인 권리가 시장에서 상품 의 유통 또는 상업적 사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때 단속할 수 있음
- 시장관리국은 직접 단속 제제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시장관리국은 지재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제한적이고 복잡한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음
- 따라서 시장관리국은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침해문 제만을 단속할 수 있는 바, 특허, 실용신안, 회로설계 및 부정경쟁에 대한 침 해문제는 관할할 수 없음.

시장관리국을 통한 행정단속 신청 구비서류

행정적 구제

- 또한 시장관리국은 공장 등 생산 장소에서 발생하는 침해문제를 단속할 권 한이 없어 생산과 관련된 유통과정에서의 침해문제는 조사단이나 경제경찰 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함

- ▶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증거서류
- ▶ 침해로 인한 손해의 증명
- ▶ 침해의 증거(침해/위조 상품의 샘플이나 사진)
- ▶ 전문가의 견해(만약에 있다면)
- ▶ 위임장(신청서가 IP대리인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

시장관리국을 통한 행정단속절차

상점조사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조사
내용파악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급습(상점)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점으로부터 침해품 압수
벌금부과 : 침해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한 벌금 부과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지침

- (상표권 선출원 주의) 베트남에서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상표권 출원이 선행되어야 함
 - 선등록된 상표 취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취소 사례는 적음
- 지식재산권 등록은 사업 진행 전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특히 최종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이라면 더욱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요함
 - 침해 사례 중 유통 파트너에 의한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파트너와의 계약 시 지식재산권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빙을 잘 관리해야 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증거 수집 후 공신력 있는 베트남 기관에 침해 사실 여부 확인 요청
 - 특히 침해 증거, 침해 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여 베트남 담당기관에 행정적 조사를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 침해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경고장 발송, 배상 협의, 필요한 경우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
- 침해 상품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시장관리국을 통한 단속 방안이 효과적으로 활용
- 한국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IP-Desk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핵심수칙

○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한다.

기술보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영업비밀 분류 및 취급,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파기,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 전 직원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모든 직원과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 전직금지서약서 체결해 기술을 지켜야 한다.

○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인력의 퇴직 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류/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받고 영업비밀 준수 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자산(기술) 중 영업비밀을 파악하고 등급(국비/비밀/대외비)을 부여하고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요서류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료를 임의로 복제와 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한다.

○ 중요설비·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발 및 제조설비 지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카메라 및 스마트폰의 반입을 금지하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개발한 기술을 특허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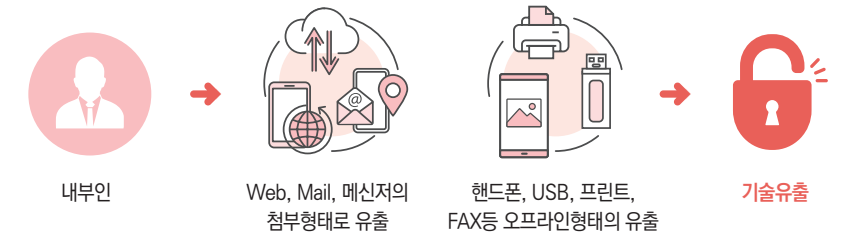
○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허가된 USB 사용하기, 기술지킴이(보안관제)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자료를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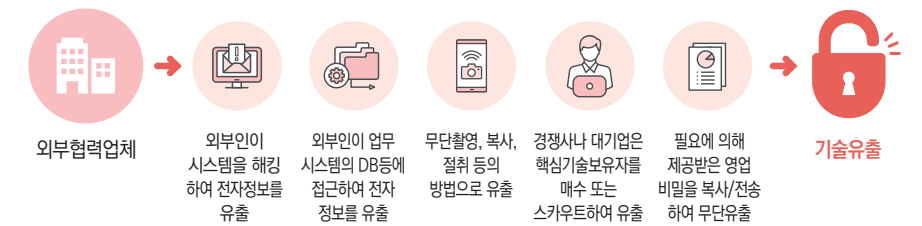
기술유출 주제 및 방법

| 기술유출 주제 |

내부인에 의한 유출



외부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 기술유출 방법 |

ON-LINE

- E-mail을 이용한 전자 문서의 전송, 웹 하드 등 P2P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공유, 메신저를 이용한 유출이 주요 이슈

OFF-LINE

- 기업의 감시망을 피해 노트북이나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법 반출하거나, 프린트나 복사물의 형태로 유출
- USB나 플래시 메모리 등 지능형 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유출이 증가

| 기술유출 경로 |

- 불법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로도 유출됨
- 경쟁사는 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인 매수를 통한 인력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이용해 기술을 유출
- 첨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거래업체를 통하여 부품 및 장비를 불법적으로 유출
- 최근에는 합법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전수를 이유로 핵심인력을 자사로 이동시키는 등 기술 유출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기술보호와 인력관리

인력관리 필요성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조직 내부의 인력관리이며, 재직기간 중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필요
채용자 관리 (신규, 경력)	• (신규) 도덕성, 범죄 및 개인파산 등의 법률적 이력, 입사동기 등 신상정보를 면밀히 검토 • (경력) 개인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이전 회사의 퇴직 동기, 이전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영업비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동종 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재직자 관리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 • 입사, 교육, 부서배치, 프로젝트 투입 등의 경우에 모든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는 분쟁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업무의 범위, 신분, 기밀의 범위 등 명시) 전직/경업 금지 약정 •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정보(기술, 고객, 거래처 등)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약정 * 핵심 기술인력 또는 임원에 한하여 체결 가능 • 통상 전직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이고 경업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2~3년임 사원증 관리 • 재직자와 외부 방문객을 구분하고 출입지역에 대한 차등적 제한 필요
퇴직자 관리	• 기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사직서 징구 * 영업비밀 보유자 등 핵심인력이 퇴직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퇴사자가 재직 시 작성한 각종 서약서나 프로젝트 투입 기록, 전자파일 등을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중역·보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보존

기술유출 발생시 대응 방안

유출사실 발생에 따른 보고

기술에 대한 침해 또는 유출사실을 발견한 경우, 간단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기업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조사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또는 부서를 파악하고 과거업무 내역 및 핵심기술 접촉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

- * 이메일, USB 등을 통한 자료반출 여부,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 및 수정 히스토리 조사 등 유출한 기술사용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해당기술의 개발 및 출시 등의 동향을 파악
- * 의심되는 회사와 관계되는 내부 임직원 또는 부서의 과거 및 현재 행적 등을 조사

추가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 실시

영업비밀 침해를 자체적 확인결과 침해가 탐지되었거나 추가 침해가 예상 되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

- * 내부직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 문서, 파일 등을 즉각 회수하여 추가 유출 방지

외부 직원 및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유출일 경우에는 회사 내부접근 및 네트워크 접속 등을 차단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침해 현상상황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물품은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비디오, 진술서 등을 신속히 확보 증거 신빙성을 위해 주체, 일시, 장소, 증거확보 경위 등도 포함해야 하고 진술서·확인서에는 본인 및 제3자의 서명도 필요(형사적 및 민사적 법적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조치방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법과 법적 구제방법이 있음